

콘텐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 - 롯데컬처웍스(주) 업무협약서

한국콘텐츠진흥원과 롯데컬처웍스(주)는 상호 교류·협력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(이하 '협약' 이라 한다)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롯데컬처웍스(주)(이하 '양 당사자' 라 한다)간 상호 교류·협력 사항을 정하고, 이를 성실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사항)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며,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1.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기획·개발
2. 콘텐츠 스타트업 선정 및 프로그램 공동 운영
3. 각 기관 보유 네트워크 및 인프라의 연계 활용
4. 협력 프로그램 추진시 온·오프라인 공동 홍보·마케팅
5. 기타 유망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관련 업무 등

제3조(성실히 이행) 양 당사자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이견이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 각 파트너사는 본 협약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입수한 상대방 당사자의 경영상의 정보와 기타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를 포함한 비밀 정보(이하 "비밀 정보" 라 한다)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본 협약의 이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본 비밀유지조항의 효력은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존속한다.

제5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. 다만 협약기간 만료 전까지 양 당사자가 협약기간 연장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6조(협약변경) 본 협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.

제7조(보관) 본 협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각 파트너사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6월 28일

한국콘텐츠진흥원
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

한국콘텐츠진흥원
원장 김영준



롯데컬처웍스(주)
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

롯데월드타워 27층
대표 차원천

